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민원감사담당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민원감사담당관	-	21,191,780	21,191,780	100%

2022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2,119만 1천원, 세입결산액은 2,119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민원감사담당관	172,025,000	135,424,650	-	-	36,600,350	21.2%

2022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1억 7,202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42만 4천원, 집행잔액은 3,660만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21.2%임.

1)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 출 잔 액	예비비
민원감사 담당관	172,025	36,600	21.2	-	-	-	36,600	0

2022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3,660만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1.2%임.

집행잔액 사유는, 지출 잔액 3,660만원임.

2. 검토의견

민원감사담당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변경하였음에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